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관련 업무보고

I 재입학 여석 현황

1. 재입학 계열별·정원 내/외별 여석 현황

구분	여석 현황		계	비고
	정원내	정원외		
주간	의료인양성	0	0	세부현황 참조
	교원양성	0	0	
	일반 학과(부)	149	27	
야간	의료인양성	0	0	
	일반 학과(부)	0	1	
합계		149	28	

2. 재입학 여석 산출법

- 가. 2023학년도 전기(4. 1자) 3. 4학년 제적(자퇴)생 수를 산정
- 나. 정원 내/외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다. 모집단위는 의료인양성관련, 교원양성관련, 야간학부(과), 이를 제외한 주간학부(과)로 구분함
 - ※ 단, 주간 일반학부(과)는 모집단위별로 아닌 총 정원으로 산출
- 라.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의학과는 재입학 불가

3. 재입학 안내

- 가. 정원 내외 입학자는 각각의 정원 내·외에 여석이 있어야 지원 가능
- 나. 교원 및 의료 양성 관련 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의 학생은 소속 모집단위에 여석이 없더라도 총정원에 대한 여석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
- 다.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부칙)에 따른 모집단위에 재입학 가능

II 계열별 및 정원 내/외별 세부 여석 현황

1.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비고
의예과	불가	불가	가. 각 모집단위 및 정원 내/외별 여석에 따라 재입학 지원 가능 나.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지원 불가
의학과	불가	불가	
약학과	0	0	
간호학과	0	0	
임상병리학과	0	0	
물리치료학과	0	0	
작업치료학과	0	0	
계	0	0	

2.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비고
특수교육과	0	0	가. 교원양성 관련 학과 재입학 여석 없음
유아교육과	0	0	
계	0	0	

3. 야간 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비고
의료인력 양성	간호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0	0	가. 야간학과 재입학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단, 정원 내외 구분)
	임상병리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0	0	
	계	0	0	
일반 학과(부)	경영통상학과(야)	0	0	
	보건관리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0	0	
	산업안전보건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0	1	
	계	0	1	

4. 주간학과(부) 정원 내/외별 여석[상기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주간 학과(부)]

정원 내	정원 외	비고
149	27	- 나머지 모든 학과(부)의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III 2023학년도 전기(4.1)자 모집단위별 제적(자퇴)수 현황

1. 재입학 여석 산출자료

가.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모집단위		정원내				정원외					총계
		3학년	4학년	5학년	여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석	
의과대학	의예과	0	0	0	×	0	0	0	0	×	불가
	의학과	0	0	0	×	0	0	0	0	×	불가
간호대학	간호학과	0	0	0	0	0	0	1	0	0	0
	간호학과(야간)	0	0	0	0	0	0	0	0	0	0
약학대학	약학과	0	0	0	0	1	0	0	0	0	0
보건의료 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1	0	0	0	0	0	0	0	0	0
	임상병리학과	0	0	0	0	0	0	0	0	0	0
	임상병리학과(야간)	0	0	0	0	0	0	0	0	0	0
	작업치료학과	0	0	0	0	0	0	0	0	0	0
계		1	0	0	0	1	0	1	0	0	0

※ 학사운영규정 제102조 ②항에 의거 의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학칙 제26조(재입학)에 의거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재입학 여석 없음

나. 야간 학과

모집단위		정원내				정원외					총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보건의료 융합대학	산업안전보건학과(야간)	0	0	0	0	0	0	1	0	1	1
계		0	0	0	0	0	0	1	0	1	1

※ 간호학과(야간), 임상병리학과(야간)은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와 중복되므로 생략함

다. 주간 학과

학과(부)		정원내				정원외					총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리버럴 아츠칼리지 (문리과대학)	국제어문학부	6	2	0	8	0	0	1	0	1	9
	영어영문학과	0	1	0	1	0	0	0	0	0	1
	음악학과	4	0	0	4	0	0	0	0	0	4
	인문문화융합학부	3	2	0	5	0	0	0	0	0	5
사회과학 대학	공공인재학부	10	1	0	11	0	0	0	0	0	11
	상담심리치료학과	1	0	0	1	0	0	0	0	0	1
	사회복지학과	0	1	0	1	0	0	0	0	0	1
	신문방송학과	3	0	0	3	0	0	0	0	0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0	0	1	0	0	0	0	0	1
	소비자·가족학과	1	1	0	2	0	0	0	0	0	2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	3	0	4	0	0	1	0	1	5
경영대학	경영학부	10	1	0	11	0	2	1	0	3	14
	국제경상학부	1	1	0	2	0	1	0	1	2	4
공과대학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9	3	0	12	3	1	1	1	6	18
	환경공학과	4	0	0	4	0	0	0	0	0	4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2	1	0	3	0	0	0	0	0	3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계양학과)	0	0	0	0	1	1	0	0	2	2
	미래에너지공학과	6	0	0	6	1	0	0	0	1	7
	산업경영공학과	0	0	0	0	0	0	2	0	2	2
	멀티미디어학부	3	4	0	7	0	0	0	0	0	7
	건축학과	5	1	1	7	1	1	0	0	2	9
	재난방재학과	0	0	0	0	1	0	0	0	1	1
	토목도시공학부	9	0	0	9	0	0	0	0	0	9
BNIT 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11	0	0	11	0	0	0	0	0	11
	의생명화학과	4	0	0	4	0	0	0	0	0	4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7	0	0	7	0	0	0	0	0	7
	제약공학과	5	1	0	6	0	0	1	0	1	7
	의료·헬스케어IT공학과	1	0	0	1	1	0	0	0	1	2
보건의료 융합대학	의공학부	4	1	0	5	0	0	0	0	0	5
	보건안전공학과	3	0	0	3	0	0	0	0	0	3
	식품영양·식품공학부	4	0	0	4	0	0	0	0	0	4
소프트웨어 대학	컴퓨터공학부	2	2	0	4	0	0	0	0	0	4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0	2	0	2	0	0	0	0	0	2
시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0	0	0	0	0	1	1	0	2	2
	시융합대학	0	0	0	0	0	1	0	0	1	1
	컴퓨터공학과	0	0	0	0	0	1	0	0	1	1
계		120	28	1	149	8	9	8	2	27	176

Ⅳ 재입학 업무 일정

연번	추진 기간	단위업무	주관 부서	내용
1	6. 22.(목)	추진 계획 및 여석 현황 보고	학사 관리과	모집 일정 보고
2	6. 23.(금)	공고 및 회람	학사 관리과	홈페이지 공고
3	6. 23.(금) ~ 7. 10.(월)	재입학 신청	재입학 희망자	각 학과(부)에서 서류 접수
4	7. 11.(화) ~ 7. 14.(금)	재입학 심사(1차)	단과대학, 학과(부)	* 재입학은 1차적으로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재입학을 불허할 경우: 사유 제출
5	7. 18.(화)	신청 현황 제출	단과대학	각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학사관리과로 제출
6	7. 19.(수) ~ 7. 26.(수)	재입학 심사(2차)	학사 관리과	재입학 심사 및 허가 여부 판정 (총장 허가 사항)
7	7. 28.(금)	허가자 공고 및 등록(수강신청) 안내	학사 관리과	* 각 학과(부)에서 개별(전화) 통보 * 학사관리과에서 메일 통보
8	8. 8.(화) ~ 8. 10.(목)	예비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자	* 예비 수강신청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9	8. 16.(수) ~ 8. 18.(금)	수강신청	재입학 등록 완료자	* 수강신청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 재입학 최종허가가 늦을 경우 별도 수강신청기간 부여예정 * 학과(부)에 문의하여 웹상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10	8. 28.(월) ~ 8. 30.(수)	등록 기간	재입학 허가자	* 해당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11	8. 31.(목)	최종 재입학생 보고	학사 관리과	최종 재입학생(등록 완료자) 현황 보고 * 재입학일: 8. 31.(목)
12	8. 31.(목)	최종 재입학생 통보	학사 관리과	각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복지처(장학), 백인제기념도서관, 사무처(경리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재입학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학 칙

제26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총 입학정원(주·야 및 정원의 내외 구분)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규정

제102조(재입학) ① 성적경고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지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보호자 연서의 재입학원(별지서식 제21호)을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④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개정 2009.3.1.,2023.3.1.〉

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미등록 제적된 자의 당해학기 재입학 허가는 1학기는 당해 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재입학하여야 한다.〈개정 2023.3.1.〉

⑥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